

2006. 4. 28.(금)

제122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

심사보고서

-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-

자치행정위원회

제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복지사업과장 지선대)

가. 제안사유

- 「여성발전기본법」 등에서 명시한 여성정책의 세부집행 기준을 마련하고, 개별규정으로 명시한 여성관련 규정을 통합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시는 양성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
 -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
 -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,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천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함
 -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천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토록 함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후준)

-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여평등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

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

-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평가 분석하여야 한다고 하므로써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충청북도 여성발전조례안(2006. 1. 5 접수)에 따라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문별 검토사항으로는
제21조의 구성 및 임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(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)의 “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자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”고 하는 관련규정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므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
-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기존의 제천시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.

기존의 기금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여성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라고 할지라도, 기금운용은 본 조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기금운용의 활성화가 여성정책의 활성화와 크게 연계된다고 볼 때, 조례의 명칭이나 목적에는 반드시 기금운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.

4. 질의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- 여성발전기금의 기금조성액은 얼마나 되나? (윤성열 의원)
- 기금을 증액 할 의견은 있는지? (윤성열 의원)

나. 답변요지 (복지사업과장 지선대)

- 여성발전기금액은 447,482천원으로 자치단체 출연금,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여성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및 여성단체의

발전과 건전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, 탄력적인 기금운용으로 여성정책을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겠음.

5. 소수의견

“없음”

6. 토론요지

“없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1부. 끝.